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맹진영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 1079

발의년월일: 2016년 3월 30일

발 의 자: 맹진영, 김인호, 김혜련, 신원철,

김광수(도봉), 양준욱, 서윤기, 이현찬, 최웅식, 이순자, 김미경, 김문수, 박준희, 김선갑, 오봉수
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 필요

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의2)

나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중소기업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 업지원시설을 확충·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
- 2. 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- 3. 중소기업 관련 연구 · 개발에 관한 사항
- 4.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 · 상담회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〈신 설〉</u> | 제2조의2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・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 원시설을 확충・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
| 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 (생 략) 〈신 설〉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고시한다. | 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2. 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 3. 중소기업 관련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 4.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.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·상담회 및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. |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2(책무)제2항에서 "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·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가능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 제2조의2(책무)제2항에서 "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·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" 규정하고 있는 바, 서울시의 예산지출 또는 지원내용이 명시적이지 않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 승 우

사업평가팀장 여 차 민

분 석 관 이 정 수

₱ 02-3705-1280, e-mail(intezer@seoul.go.kr)